

음악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내규

시행일 : 2017.9.1.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음악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평가대상) 평가의 대상은 음악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.

제 3 조 (평가주기) ①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, 교육평가는 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조 (평가영역 및 정의) ①평가는 연구, 교육, 봉사의 영역으로 한다.

②각 평가 영역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는 해당전공 학문의 예술적, 지성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 활동을 말한다.
2. 교육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(강의, 실기실습 등)하고 지도하는 제반 교수활동을 말한다.
3. 봉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,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 5 조 (연구평가) 연구평가 평정기준은 교수연구실적 평정규정 <별표>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..

제 6 조 (교육평가) 교육평가는 수강학생이 평가하는 강의평가와 평가단위별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교육 내용 평가로 구분한다.

제 7 조 (봉사평가) 봉사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회활동 및 전문지식을 활용한 자문, 무보수 외부강연 등
2. 교내 보직활동 실적, 위원회 활동실적 및 기타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
3. 학생의 과외활동 및 학생생활 지도 등
4. 정규음악회가 아닌 행사공연 등

제 2 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

제 8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음악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음악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④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 교수가 된다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

제 9 조 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의결 한다.

1. 음악대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
2. 교수업적평가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
3. 업적평가에 관련된 기타 사항

제 11 조 (평가대상기간) 위원회는 업적평가 대상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

제 3장 교수업적 평가절차

제 12 조 (교수업적의 입력) 전임교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구실적 및 사회봉사실적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베이스에 개별적으로 입력한다.

제 13 조 (입력자료의 전달) 위원장은 음악대학 전임교원의 강의평가결과와 “제12조”에 의거하여 입력된 연구업적 및 사회봉사실적 목록을 매학기 해당일까지 음악대학 교원들에게 전달한다.

제 14 조 (증빙서류 제출) 전임교원은 “제 12조”에 의거하여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매학기 해당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증거물의 인쇄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익년도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교원별 업적평가) 위원회는 음악대학 교원들이 제출한 업적증거물과 입력된 업적목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, 매년 해당일까지 “제10조”에 의하여 합의된 교수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업적을 평가한다.

제 16 조 (교원별 통보) 위원장은 매년 해당일까지 교원별 업적평가결과를 음악대학 교원들에게 통보한다.

제 17 조 (이의신청 및 처리)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음악대학 교원은 매년 해당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매년 해당일까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입력자료의 수정요청) 위원장은 매년 해당일까지 음악대학 교원들의 수정된 연구실적 및 사회봉사실적을 각각 연구(산학협력)처 및 교무처에 제출하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9 조 (평가결과의 제출) 위원장은 매년 해당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본교 교수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음악대학의 교수업적평가 기준
2. 해당 교원별 업적평점
3. 음악대학이 지향하는 주요 발전지표 및 발전지표별 전년대비 성과 비교표

제 20 조 (특별평가) ①교무위원회 및 교내외적으로 학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교원(비자발적으로 휴직하여 타기관에 파견된 교원을 포함한다.)의 업적은 총장이 별도로 평가한다.

②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교육평가 성적만으로 본교 교수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21 조 (휴직 또는 연구년 기간의 교원평가) 휴직 및 연구년 등의 사정으로 강의를 하지 않은 교원의 강의 실적은 직전연도 또는 직전 2년간의 평균강의실적점수에 의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연구 및 사회봉사실적은 해당 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평가한다.

제 22 조 (보칙)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